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0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6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중 정정(안)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6.)의 별지6 약제 중 아래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구분	제품코드	제품명	업체명	규격	단위	상한금액	변경전	변경후
1	623005210	엔티텔미정40밀리그램 (텔미사르탄)_(40mg/1정)	한국신텍스제약(주)	1	정	362	급여 삭제	급여 유지
2	623005960	엔티텔미플러스정 40/12.5밀리그램_(1정)	한국신텍스제약(주)	1	정	365		
3	641100141	씨프로바이주사(시프로플록사신) _(0.2g/100mL)	바이엘코리아(주)	100	mL/병	7,394		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